

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

「민법」 제38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9조(설립허가 취소)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9일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

1. 처분의 제목 :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

2. 처분대상

- 법인명 :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
- 소재지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1길 20-2, 2층
- 대표자 : 안 두 영
- 설립허가일(허가번호) : 2023. 01. 10.(제920호)

3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공익을 침해

- 설립허가 조건 위반 : 6개월 이내에 계란 시세 발표(산지가격 고시) 중지 등을 조건부로 협회 설립을 허가하였으나, 2026. 1. 21까지 시세발표를 지속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
- 공익 침해 :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(공정위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)

4. 법적근거

- 민법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
-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(설립허가의 취소)

5. 기타사항

-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소송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「행정심판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축산경영과(☎ 044-201-2344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